

모델 33

누적기준 활용 모델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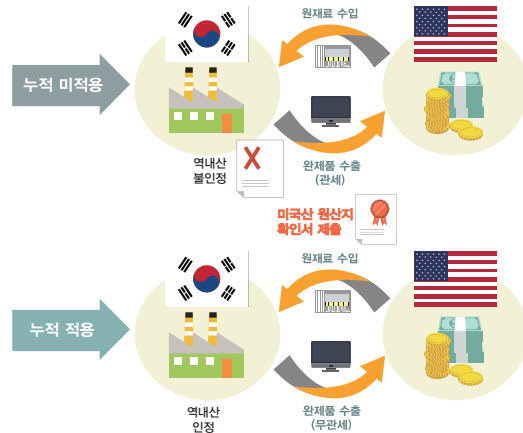
-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 모델

누적기준 어떤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02 | 비즈니스 모델

- **(재료누적)**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판정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며 모든 FTA협정에서 인정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페루 FTA에서는 인정되나, 한-인도, 한-아세안, 한-EU, 한-EFTA FTA에서는 불인정

누적기준 활용 모델



※ (유의사항)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협정에 공정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별기준에서 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누적 인정가능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누적기준 적용 FTA
- 특히 체약상대국과 운송비가 적게드는 경우 유리

누적기준 적용가능 협정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㉔재료누적	○	○	○	○	○	○	○
㉕공정누적	○	○	○	○	×	×	×
근거규정	제4.5조	제4.9조	제6.6조	제6.5조	제3.7조	제7조	3조